

#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

## I. 목적

1. 이 기준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11.12.26. 재정, ’12.1.1. 시행)에서 정한 기본원칙 중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및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시 1> DDoS 공격 시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 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예시 2> 망에서 피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예시 3> 이동통신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

-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 망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P2P 트래픽에 대해 특정 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 외에 망 혼잡을 유발하는 대용량 트래픽도 제한할 수 있다.

**<예시 4>** 인터넷 이용자가 많은 최번시 또는 일일 사용량 초과 이용자 등에 대해 P2P에 대한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경우

나.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소수의 다량이용자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5>** 월별 사용량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다량 이용자)의 트래픽을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다. 불필요한 망 혼잡을 유발하거나 기술 특성상 망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에 대해 혼잡 또는 장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할 것을 사전에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콘텐츠 등을 망 혼잡 시 우선 차단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시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에 규정한 불법 정보(음란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청소년유해 매체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제한할 것을 명한 정보 차단하는 경우

④ 스팸,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맺어진 정당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 Ⅲ. 트래픽 관리정보의 공개

#### 공개 대상 정보

3.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 정보의 공개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 관리 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서비스의 종류 또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방침과 비교 가능하도록 공통 양식(별지 참조)을 정하여 트래픽 관리 방침을 공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공통 양식에 따르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양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공통양식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 절차 및 방법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관리 상황에 요구되는 단계별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예시 7> 일시적 혼잡관리 실행 절차

- 혼잡에 대한 인지(모니터링) → 이용자 고지 → 트래픽 관리 → (필요시 사후 고지) → 혼잡상황 모니터링 → 혼잡상황 해제 시 트래픽 관리 종료

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가 요구되는 원인과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차단, 전송 속도 제한 등 트래픽 관리의 적합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트래픽 관리 시 접속서비스의 전송 속도 변화 등 해당 트래픽 관리의 실행으로 인한 영향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고지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는 이용약관에 근거하여야 하며, 트래픽 관리 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외에도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을 통해 충분히 안내되어야 한다. 특히, 개별 이용자 차원의 트래픽 관리가 시행되는 경우,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이메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기구의 운영

8.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이용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IV.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9.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트래픽 관리 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시 조사를 통해 트래픽 관리 행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0.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유무선 망의 유형이나 기술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① (투명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이용자 및 트래픽 관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여부

- ② (비례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동기와 부합하는지 여부 및 당해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이용자와 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예시 8> 혼잡관리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트래픽 관리로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기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예시 9> 혼잡관리를 위해서는 전송 속도 제한으로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을 전면 차단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전송속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 ③ (비차별성)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등, 기기 또는 장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다만, 관리형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10>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동일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서비스 A와 B에 대해, A서비스는 차단하고 B서비스는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 V. 인터넷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

11.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제조사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트래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규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망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제조사가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망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양식(예시)

<별 지>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양식(예시)

1. 트래픽 관리 기준						
● 망 부하시 트래픽 관리						
	적용 조건					
	적용 대상					
	적용 방식					
	적용 후 영향					
	적용 기간					
● 상시 트래픽 관리						
	구분	내용	관리방안			
	불법/유해 콘텐츠					
	이용약관 상 제한 서비스					
	망 위해(危害) 트래픽					
	기타					
2. 트래픽 관리 유형						
구분	적용 대상		열화(속도 감소 등)	차단/접속 제한	기타	비고
상시	공통					
	유선					
	무선					
망부하시	공통					
	유선					
	무선					
3.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고지 방식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이용자 고지 방식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본 양식과는 별도로 트래픽 관리방침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질의·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